

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

세화고등학교 인사 행정의 공정을 기하여 교원 간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칭함)를 설치 운영한다. 본 규정은 일주.세화학원 정관 제41조의 4 부터 제41조의 11 까지의 교원인사위원회 내용을 준수하되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.

제2조 (위원회의 기능)

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- ②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
- ③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- ④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 (위원회의 조직)

-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한다.
-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- ③ 인사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교과협의회에서(국어, 수학, 영어, 사회, 과학, 예체능 교양)에서 각 1명씩 선출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하고, 여기에 학교장이 직접 임명하는 4인 이내의 위원을 더하여 구성한다.
- ④ 위원이 징계, 해직 또는 퇴직 시는 자동 해임된다.

제4조 (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)

-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이 임명한다.
-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- ③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 (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)

-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- ② 인사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 (회의록 작성)

-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·날인한다.

제7조 (인사위원회의 간사 등)

- ① 인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운영세칙)

일주.세화학원 정관 제41조의 11 인사위원회의 운영세칙에 따라 정관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제9조 (규정개정)

본 규정은 일주.세화학원 정관의 개정이 있거나 학교장의 개정발의, 인사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개정발의가 있을 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19년 4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